



교육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
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재단

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(희망사다리 I유형) 시행계획(안)

2023. 2.

“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”

청년취업장학부



목 차

I. 사업개요	1
1. 추진 목적	1
2. 사업 개요	1
II. ’23년도 주요 개선 사항	2
1. 직무기초교육 개선	2
2. 중소기업 유관기관 협업 강화	2
3. 사후관리 기준 확립	3
4.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등	3
III.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	4
1.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	4
2.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	5
3. 장학생 선발	6
4. 장학생 의무사항	8
5. 사후관리	9
6. 추진일정	10

[별첨]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[희망사다리 | 유형] 장학사업 업무
처리기준

I 사업 개요

1 추진 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

2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'23. 3월 ~ '22. 12월(신청기간 포함)
- 사업규모 : 45,880백만원
 - * 사업운영비 : 1,858백만원 별도(I·II 유형 공통)
- 지원대상 :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및 전문대학 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(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)
-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 지원금 200만원(학기별)

<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원 실적 >

구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금액(백만원)	34,505	34,412	44,607	46,042	44,497
건수(건)	7,528	7,149	9,261	9,382	9,306
인원(명)	4,611	4,893	6,045	5,902	5,676

II '23년도 주요 개선 사항

1 직무기초교육 개선

- 외부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무기초교육 자료를 제공하고, 교육 이수 증빙 절차를 간소화·전산화 추진

구분	1단계	2단계	1단계	2단계
경로	직업교육기관(휴넷)	일자리 박람회, 봉사활동 등	직업교육기관(휴넷)	직업교육기관(휴넷)
내용	직업심리검사	행사 참여	직업심리검사	직업교육기관 강좌
증빙	전산 확인	장학생이 직접 증빙서류 제출	전산 확인	전산 확인

* 직업교육기관 강좌 수강을 우선하되,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타 활동 인정

2 중소기업 유관기관 협업 강화

- (맞춤형 컨텐츠) 일자리 박람회 및 취업 플랫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학생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하여 배포(SNS, 취업사이트 등)
- (채용박람회)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온·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, 장학생에게 취업 정보 및 면접 기회 제공
- (취업플랫폼) 장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플랫폼* 가입과 이력서 등록을 독려하고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홍보

< 중소기업 유관기관 협업 추진 계획 >

기관	주요 추진내용	기대 효과
IBK기업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업 우수 협력사가 참여하는 온·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(6월, 11월) • 아이원잡(i-one job)* 가입 및 이력서 등록을 통한 구직 활동 독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장학생)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취업 정보와 기회 제공 ✓ (중소기업) 대졸 우수 인재 확보 기회 제공
한국중견기업 연합회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(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우수 중견기업 취업 정보 제공 및 부정적 인식 해소
신용보증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잡클라우드(Job Cloud)* 가입 및 이력서 등록을 통한 구직 활동 독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희망사다리 사업 장학생 맞춤형 취업 기회 제공

3 사후관리 기준 확립

- 보증이행 청구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 확립
- 보험사고 종류별 보험금 청구요건, 입증서류, 고객안내 절차 등 보험 청구 제반 절차 확립
- 보험 청구 대상자 조회, 보험청구, 반환, 실적관리 등을 효율적인 보증보험 청구 관리를 위한 위한 시스템 개발
- 보증이행 청구 전 대고객 안내 강화
- 고객 신용 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증이행 청구 전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지 등 대고객 안내 절차 강화(통지계획 별도 수립)
- 자퇴·제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(~23. 12월)
- 자퇴·제적자도 의무종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검토

4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등

- 의무종사 이행기준 명확화,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의무종사 추가 유예,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 등 확립
- (의무종사) 인정 제외기업, 인정서류, 이행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업무처리 일관성 확보
- (추가유예)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, 의무종사 유예기간(1년)을 추가 부여
- (환수) 장학금 반환기한·금액산정, 환수사유·방법 등 기준 세분화
-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
- 통지문 및 통지 방법 개선, 법적조치 절차 마련, 산업별 인력수급을 감안한 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업무 개선 노력

III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

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-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*에 재학 중인 자(일반대 3학년 이상, 전문대 2학년 이상)

* (사업 참여대학) 사업 참여 가능 대학*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

** (사업 참여 가능 대학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

-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(신·편입생,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)
-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불가하나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년에 한해 지원 가능(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)
-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
 - 단, 전공 심화·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- (지원내용)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

- 등록금 : 학기당 등록금 전액
 -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
 -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에 비례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
- 취·창업지원금 : 학기당 200만 원
 -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·창업지원금 미지급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>

취업지원형	창업지원형
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	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운영 절차 >



2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

- (장학금 신청)**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,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
 - 장학금 신청 시,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사전
교육 및 진단평가 필수 진행
 -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 추천 불가
- (인원배정)*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
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
 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
 - 장학유형별(취업지원형, 창업지원형) 인원배정은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
배정하되,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%로 함
 -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:50으로 할당*하고, 신청자 비율에
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

* 학제별 · 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

3 장학생 선발

- (신규장학생) 학생성적(50%)과 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(50%)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
-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
* 단,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

<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 I 유형) 장학생 추천 기준(예시) >

구분	학업성적 [가이드라인 준수]		학생 취업·창업 의지 ^[1] [대학별 별도기준 포함]			
	백분위 점수	배점(50점)	취업지원형	배점(50점)	창업지원형	배점(50점)
평가 기준	100점~97점	50	취업·창업 준비계획 ^[2]	20	취업·창업 준비 계획 ^[1]	20
	96점~93점	48				
	92점~90점	46				
	89점~87점	44				
	86점~83점	42	대학자체기준 ^[3]	30	대학자체기준 ^[2]	30
	82점~80점	40				
	80점 미만	30				

1)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 불가)

2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

3) 청년/기술창업 우대, 취·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, 관련 강의/강좌 참여 여부,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

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, 미제출 시 취업·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
- 학생 취·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
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은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
※ 단, 전공심화·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
- 특정 계열·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,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

(계속장학생)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
-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*을 이수하고,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

*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
*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

(수혜횟수)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

-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 횟수(❶)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❷)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-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, 국가근로장학금 ·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
-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, 대학은 이연 장학금(전액)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

< 학제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>

구분	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
일반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❶)	-	-	4회	6회	8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❷)			8회	10회	12회
전문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❶)	2회	4회	6회	8회	10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❷)	4회	4회	8회	10회	12회

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,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

(기타사항)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(포기자 포함) 및 수혜종료자*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

- 단,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진학(편입)한 경우, 전공심화 및 편입 첫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

4 장학생 의무사항

- (의무종사 이행)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*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
 - 의무종사 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(180일)
 -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
- (직무기초교육 이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
 -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
 - * 단계별 상세 이수·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 - 미이수 시,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
 - 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 과정 >

구분	진로 탐색 과정	취·창업활동 과정
취업지원형	1. 직업심리검사 (워크넷)	① 자기계발, ② 행사참여, ③ 봉사활동, ④ 이력서 컨설팅, ⑤ OUT 등 사내교육, ⑥ 장학생 Network 형성을 통한 취·창업활동
창업지원형	1. 직업심리검사 (워크넷) 2.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(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)	<u>中 택 1하여 이수</u>
이수 대상	신규장학생만 이수	모든 장학생(신규 + 계속장학생) 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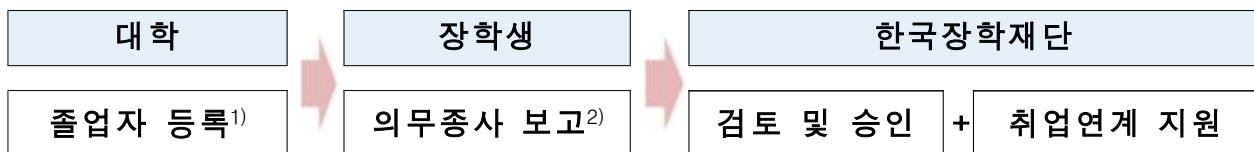
- ※ 취업지원형의 경우,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·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(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)
- ※ 창업유형의 경우,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

- (학적유지)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
 -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
 -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(6개 학기)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

- (정보제공 동의)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- 단, 선발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 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
- ※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

5 사후관리

-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



1) 학자금지원시스템 > 공통 > 학적상태관리 > 졸업/수료정보관리 > 등록

2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희망사다리장학금 > 의무종사관리 > 보고

※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

- (장학금 반환)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

< 학적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사유 및 반환 기한 >

구분	재학 중 반환	졸업 후 반환
반환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퇴/제적 등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포기 신청 직무 기초교육 미이수 학자금 중복지원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무종사 미완료 의무종사 포기 재학 중 발생한 반환사유를 졸업 전까지 미해소한 경우
반환 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환 사유 발생 당해 학기 내 반환 단,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즉시 반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환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단,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유예 가능하며, 유예 종료 후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환수절차 개시

※ 오선발(허위정보 기재, 심사오류 등)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반환

- (장학금 환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
- 의무종사 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 약정 미체결한 자
 - 반환 약정기간 3년이 모두 종료된 자
 -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중 취·창업지원금 반환 청구*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액 반환하지 않은 자

* 졸업자 중 취·창업지원금 수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가 불일치 하는 경우
 -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자
- (면제)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, 장애,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장학금 반환(환수) 면제 가능

6 추진일정

- (1학기) 신청접수('23. 2~3월) 및 장학금 지급('23. 3~5월)

- (2학기) 신청접수('23. 8~9월) 및 장학금 지급('23. 10~12월)

내용	1/4분기			2/4분기			3/4분기			4/4분기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- 사업계획 수립	○											
- 장학생 모집		○	○				○	○				
- 장학생 심사 / 장학금 지급			○	○	○				○	○	○	

*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<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>

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

- 단,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

■ 대기업 (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) *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

■ 비영리법인

- 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

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-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www.alio.go.kr)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

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

- 지방직영기업(제5조), 지방자치단체조합(제44조), 지방공사(제49조), 지방공단(제76조), 지방공기업평가원(제78조의 4)

-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www.cleaneye.go.kr)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

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기관

-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www.cleaneye.go.kr)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·출연기관

■ 부(父) 또는 모(母)가 대표로 있는 기업

***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조치**

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: 프리랜서

■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: 아파트 관리사무소, 어린이집 등

■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

■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

- 단,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(중소·중견기업에 한함)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

■ 재직인정 제외 업종 (☞붙임 1.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)

- 소비향락업 :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5호의 「청소년유해업소」, 「풍속영업규제법」제2조, 「사행행위규제법」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
* 예시 :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돌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
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(I),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(R)

-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·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

***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조치**

취업지원형

■ 창업인정 제외 업종 (☞붙임 1.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)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상 제외 업종 : 음식점업, 커피전문점, 이용(미용)업, 주점, 노래연습장, 부동산, 복권판매, 약국, 병원(의원), 골프장, 스키장 등

- 전공자의 음식점업·커피전문점·이용(미용)업·부동산업·보험업 창업 인정. 단,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(의원)·약국은 창업 불인정

창업지원형